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2.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49호로 2022년 1월 24일 차인영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교육평가 시기 및 기준 등  
(안 제4조~제6조)

다. 교육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1조)

라. 실무평가단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1. 25. ~ 2. 3.)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진행과정에서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평가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지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교육영향평가”, “시행부서”, “평가부서”의 용어를 정의함.
- 안 제4조는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공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자연환경·교육·복지 관련 시설 등의 보수 사업과 환경, 체육, 문화, 교육, 복지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함.
- 안 제5조에서 교육영향평가는 대상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며, 다만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파급효과 등 기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기에 실시함.

-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대상사업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는 대상사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실무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 ○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적 효과를 미리 검토·예측·평가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됨.

다만, 교육영향평가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평가이므로 사업 시행부서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끌어낼 수 있는 교육담당부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